

◎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-175호
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04일

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
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간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추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명단공표 관련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·의결 대상으로 추가*

* 공정위 심의·의결 대상 추가는 「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(공정위 고시) 개정 사항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(정부세종청사) 2동 기업거래정책과

- 전자우편 : dia7942@korea.kr

- 팩스 : 044-200-4977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tc.go.kr>) 「정책/제도 - 입법예고」란을 참조하시거나,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(전화 044-200-4948)로 문의하여 주시기

기 바랍니다.